

대구지방법원 2022. 12. 9 선고 2022가단1242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25.

판 결 선 고 2022. 12. 9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. 12. 26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. 5. 29.접수 제86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주 장

가. 원고의 주장

- 1) 소외 D 주식회사는 소외 C에 대하여 “156,268,484원과 그 중 50,000,000원에 대하여 2005. 8. 5.부터 완제일까지 연 18.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내용의 양수금 채권(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 346655호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,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)을 갖고 있다.
- 2) D 주식회사는 2016. 12. 16. 원고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.
- 3) C의 어머니인 망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인 2019년경 사망하였고, 이에 따라 E의 자녀들인 C, F, G, 피고, H이 각 5분의 1씩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다. 그런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던 C은 2019. 12. 26.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5분의 1 상속지분을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)를 하고, 이에 따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. 5. 29.접수 제86736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(이하,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)절차를 마쳤다.
- 4) 그러나 C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사해의사는 사실상 추정된다.
- 5)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는 것이다.

나. 피고의 주장

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1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.

2. 판 단

갑제1호증 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,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무자력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, 이 사건

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 인식이 있었던 사실은 추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의 제척기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, 강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22. 5. 경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종화

별지

부동산 목록

대구 동구 1 대 389㎡ 중 525분의 25 지분(망 E의 지분)

